

• 새로운 연수 • 튼튼한 연수 • 따뜻한 연수



연수구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선	기 관 의 장
람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835호 2014. 11. 24.(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90호(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4-26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조례안) 2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4-27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회							
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2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11, 24-9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	신축	2009-05-14	테크노파크 단지를 지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749-7594 ~ 75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1.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1999년 제정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표창규칙」은 국회표창 규정을 인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현재 구의회 포상업무와는 맞지 않는 내용 등이 있어 본 규칙을 폐지함과 동시에,
- 구의회 위상에 맞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조례」로 격상시켜 보다 명확하게 포상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4조)
- 포상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포상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포상대상자 및 서훈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 이중포상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방법)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양양
2.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사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 한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서훈 등 추천)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인천광역시장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수상자 명부) 수훈 및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표창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문 안)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 ○ ○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문 안)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문 안)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 ○ ○ ○

공적심사의결서

- 회 의 명 : 제 회 의회공적심사위원회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부의안건 :

표 창 장	훈 격	선정인원	추천인원

- 의 결 :

훈 격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의 결	의결 사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공 적 조 서

(앞 면)

① 성 명	한 자		
	(원명)		
②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③ 군 번 (군인인 경우)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 급 (직급, 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			
⑫ 추천훈격		⑬ 추천순위	
조 사 자			
⑭ 소 속		⑮ 직 위	
⑯ 직 급		⑰ 성 명	①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 면)

주요 학력 및 경력			
⑱ 년 월 일	⑲ 이 력	⑳ 년 월 일	㉑ 이 력
㉒ 년 월 일	㉓ 내 용	㉔ 년 월 일	㉕ 내 용
㉖ 공 적 사 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수구의회의원 의정비심의 결과가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제3항의 별표2 월정수당지급기준표 개정
- 월정수당지급기준표 매월 1,826,660원에서 1,857,500원으로 개정
- 2015년도는 지급기준표대로 지급
- 2016년~2018년도는 지급기준표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개정 2007.12.27, 2010.12.27>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의원1인	월 1,857,500원

비고 : 1. 2015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16년~2018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07.12.27, 2010.12.27>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별표 2) <개정 2007.12.27, 2010.12.27>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의원1인	월 1,826,660원	의원1인	월 1,857,500원
		비고 : 1. 2015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16년~2018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